유전자검사 동의서

동의서 관리번호									
	성	명	성 기재	이름기재			생년	월일	
검사대상자	주	소		시(도)	구(군)	상세-	주소		
	전 화	번 호	지역번호	국번	번호	생년월일 상세주소 전 별 관 계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사			
법정대리인	성	명	성 기재	이름기재			관	계	
급경네니킨	전 화	번 호	지역번호	국번	번호				
O 전체 및 11기기	기 판	<u></u> 명							
유전자 검사기관	전 화	번 호	지역번호	국번	번호				
유전자검사	목	적	[] 2. 질병 예· [] 3. 영양, 생 [] 4. 유전적 1		검사 후 특징에 따른 · 유전자검사		†을 위험	한 유전	자검사
	항	목							
 의뢰기관 (검사목적 1과	의료기	기관명							
2의 경우) 	의뢰	의사							

본인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해당 유전자 검사의 목적과 결과의 함의와 한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.

변 월 일 검사대상자 성기재 이름기재 (서명) 법정대리인 성기재 이름기재 (서명) 상 담 자 성기재 이름기재 (서명)

※ 동일한 대상 및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서 작성 없이 아래 서명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· 0EL 110 X 1	15 115 111	12 112 12 11	" "" IL E— 10 I	1 10 11	11 10L 11E	1			
	년	월 일		년	월 일		년	월	일
검사대상자 성 기재	이름기재	(서명)	검사대상자 성기재	이름기재	(서명)	검사대상자 성기재	이름기재		(서명)
법정대리인 성 기재	이름기재	(서명)	법정대리인 성기재	이름기재	(서명)	법정대리인 성기재	이름기재		(서명)
상 담 자 성기재	이름기재	(서명)	상 담 자 성기재	이름기재	(서명)	상 담 자 성기재	이름기재		(서명)

첨부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유의사항

- 1. 이 유전자검사의 결과는 10년간 보존되며,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2.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 등 검사대상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 및 검사동의서,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에 관한 기록물과 그 관리대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. 다만, 보존 중에 검사대상자가 다른 검사기관이나 질병관리청으로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관할 수 있습니다.
- 3. 유전자검사기관은 동의 받은 목적 외 검사대상물 및 관련 정보를 보존·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.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 및 분야,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별지 제34호의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또는 별지 제41호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4.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시행하려는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검사항목, 검사대상물의 관리 방법, 동의의 철회 방법,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,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,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,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.

유전자검사 동의서

동의서 관리번호									
검사대상자	성	명	성 기재	이름기재			생년	월일	
	주	소		시(도)	구(군)	상세=	주소		
	전 화	번 호	지역번호	국번	번호		성	별	
이다마저버	성	명	성 기재	이름기재			관	계	
법정대리인	상자								
	기 곤	<u></u> 명							
유전자 검사기관	전 화	번 호	지역번호	국번	번호				
유전자검사	목	적	[] 2. 질병 예측 [] 3. 영양, 생활 [] 4. 유전적 혈	등을 위한 유전자 할습관 및 신체적 불통을 찾기 위한	검사 특징에 따른 질병 유전자검사	의 예빙	을 위험	한 유전	!자검사
	항	목							
의뢰기관	의료기	관명							
(검사목적 1과 2의 경우) 	의뢰	의사							

본인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해당 유전자 검사의 목적과 결과의 함의와 한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.

											년	월	일
									검사대상자	성 기재	이름기재		(서명)
									법정대리인	성 기재	이름기재		(서명)
									상 담 자	성 기재	이름기재		(서명)
※ 동일한 대상 및 목 ⁻	적을 위한 추기	^나 적인 유	던자검사(에 대해서는 별	도의 동의/	서 작성 없이	아래 서명	만 추가할	할 수 있습니다.				
	년	월	일			년	월	일			년	월	일
검사대상자 성 기재	이름기재		(서명)	검사대상자	성 기재	이름기재		(서명)	검사대상자	성 기재	이름기재		(서명)

법정대리인 성기재

상 담 자 성기재

이름기재

첨부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(서명)

법정대리인 성기재

상 담 자 성기재

유의사항

법정대리인 성 기재 이름기재

상 담 자 성기재

- 1. 이 유전자검사의 결과는 10년간 보존되며,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2.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 등 검사대상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 및 검사동의서,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에 관한 기록물과 그 관리대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. 다만, 보존 중에 검사대상자가 다른 검사기관이나 질병관리청으로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관할 수 있습니다.
- 3. 유전자검사기관은 동의 받은 목적 외 검사대상물 및 관련 정보를 보존·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.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 및 분야,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별지 제34호의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또는 별지 제41호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4.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시행하려는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검사항목, 검사대상물의 관리 방법, 동의의 철회 방법,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,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 · 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,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,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.